

과업지시서

1. 과업개요

가. 과업명: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교통영향평가 용역

나. 목적: 에벤에셀관 지하2층 ~ 지상1층 복합용도로 변경에 따른 교통량 변화를 예측하고, 발생 가능한 교통문제를 최소화하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인허가를 득함

다. 과업의 범위

- 1) 공간적 범위: 대학교 부지 및 인접 영향권 교차로/가로
- 2) 내용적 범위: 교통현황 조사, 수요 예측, 주차 및 동선 계획, 개선방안 수립, 심의 대응

라. 과업기간: 인허가 완료 시 까지

2. 과업내용

가. 용도변경 내용

위치	현재	변경
에벤에셀관 지상1층 (예식장 관련 시설)	교육연구시설	복합용도 (교육연구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)
에벤에셀관 지하1층 (예식장 관련 시설)	교육연구시설	복합용도 (교육연구시설, 근린생활시설)
에벤에셀관 지하2층 (예식장 관련 시설)	교육연구시설	복합용도 (교육연구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)

나. 교통환경 조사 및 분석

- 1) 현황 조사: 학교 주변 도로의 소통 상태, 교차로 기하구조, 신호 운영 현황 조사
- 2) 주차 실태: 현재 교내 주차장 이용률 및 복합용도 예정지 주변의 주차 여건 분석
- 3) 토지이용 현황: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상의 도로망 및 보행 동선 확인

다. 교통수요 예측

- 1) 발생 교통량 산정: 기존 교육시설일 때와 변경 후 복합시설일 때의 유입/유출 교통량 비교
- 2) 주차 수요 산정: 법정 주차대수뿐만 아니라, 실제 이용객 특성을 고려한 주차 수요 분석
- 3) 영향권 설정: 용도 변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요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

변화 예측

라. 개선대책 및 설계 반영

- 1) 진출입 동선 계획: 외부 이용객 차량과 교내 셔틀버스, 학생 보행 동선이 엉키지 않도록 분리 동선 수립
- 2) 주차장 운영 계획: 복합시설 이용자를 위한 별도 주차 구역 지정 및 요금 체계(필요 시) 검토
- 3) 교통안전 시설: 교내 과속방지턱, 보행자 통로, 안전 표지판 등 추가 설치 계획

마. 심의 및 인허가 업무

- 1) 보고서 작성: 교통영향평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정식 보고서 작성
- 2) 심의 대응: 시·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참석, 제안 설명(PPT), 심의 위원 질문 답변
- 3) 이행계획서: 심의 의결 조건(보완 사항)에 대한 조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

3. 과업 수행 지침

- 가. 건축/도시계획과의 정합성: 복합용도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및 건축 설계안과 교통 개선 대책이 상충하지 않도록 실시간 협의할 것
- 나. 보행자 안전 최우선: 대학 캠퍼스 특성상 학생들의 보행 밀도가 높으므로, 복합 시설 차량 진입 시 보행자 안전 대책(Smart Ramps 등)을 강력히 반영할 것
- 다. 대중교통 연계: 외부 방문객의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한 교내외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 연계 및 안내 체계 개선안 포함

4. 성과품 납품 목록

- 가. 교통영향평가 보고서(본보고서 및 요약보고서): 2부
- 나. 심의용 발표 자료(PPT 및 판넬): 1식
- 다. 교통수정계획서 및 이행계획서: 2부
- 라. 관련 데이터 및 수치해석 모델링 파일: 1식 (USB 제출)

5. 용어의 정의

- 가. “공사”란 건설(토목·건축·설비·조경·환경시설 및 기계설비 등), 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 등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·유지·보수 및 해체 등을 말한다.
- 나. “용역”이란 재물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나 노력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.
- 다. “경미한 공사”란 계약금액 1,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말하며, 시설물의 구조적 형태를 변경하거나 신설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.(예: 환경개선, 칸막이 신설, 바닥재 전면 교체, 전기회로 증설 등)
- 라. “수리 및 수선(유지관리)”란 기존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

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·정비하고, 손상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기능 회복에 필요한 부품을 교체하는 일상적인 행위를 말한다.(예: 바닥재 보수, 벽체 보수, 배선기구 교체, 감지기 교체, 냉난방기 세척 및 수리, 설비 부속 교체 등)

6. 계약

- 가.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 청구서, 각서, 승낙사항 등 계약의 성립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.
- 나. 내역서는 육안점검을 통하여 안목치수로 산출하여야 한다.(도면산출 인정 불가)
- 다. 계약상대자는 내역(물품, 단가, 수량, 준공일 등) 변경 시 지체없이 공사관리자에게 보고 및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라. 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산정하여야 한다.
- 마. 계약상대자는 내역 변경 요청 시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바. 공사관리자는 과업내역 변경 접수 후 변경계약을 계약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.

7. 착수

- 가.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, 발주자가 요청하는 착수서류(착공체크리스트 등)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경미한 공사 및 용역은 착공서류를 생략할 수 있고, 생략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.
- 나. 경미한 공사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,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8. 준공

- 가.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, 발주자가 요청하는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경미한 공사 및 용역은 준공서류를 생략할 수 있고, 생략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.
- 나. 경미한공사 및 용역은 거래명세서 및 사진대장 제출로 준공을 갈음할 수 있다.
- 다. 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한 사항만 인정되며, 용품 반입 등 발주자의 필수 확인 되어야한다.

9. 일반 및 보안 조건

- 가.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, 관계법령,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- 나.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대학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.
- 다.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,

협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.

- 라.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학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- 마.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보안책임이 있으며,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바.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.
- 사.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.